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8. 10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알림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한O	1985.06.19.	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분 알림	수급자가 지원대상 기간 내 구직촉진수당 3회 미지급으로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분(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 없음)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 : 2021. 8. 10. ~ 2021. 8. 24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 권다혜(Tel. 031-496-192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